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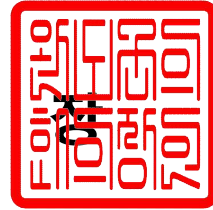
완도군의회 공고 제 2024 - 2호

##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

「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4년 1월 11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 
조례안
2. 발 의 자 : 조 인 호 의원
3. 제정이유
  -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및  
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4.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군민의 책무(안 제4조)
-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(안 제5조)
- 포상(안 제6조)

## 5. 관련법령 : 해당없음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4. 1. 11. ~ 2024. 1. 16.

## 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### 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  
(전화: 061-550-5934, FAX: 061-550-5907)

### 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## 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
1부. 끝.



##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불용의약품”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.
2. “폐의약품”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·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완도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, 수집, 운반,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(이하 “불용의약품 등”이라 한다)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군민의 책무) ① 군민은 의사·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
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완도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소재 약국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불용의약품 등의 관리) 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, 보건의료원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고, 환경수질관리과장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처리장소로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제6조(포상)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「완도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